

1997. 7.

## 제 정 및 개 정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통빛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조 례 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97. 7. 21	'97. 7. 21	'97. 7. 22	'97. 7. 22	시정과장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7. 7. 11	'97. 7. 14	"	"	"
충주시봉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	회계과장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용자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사회과장

## 2. 제안설명요지

### 가.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 1) 제안이유

-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기한이 1997. 6.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내무부로부터 1999. 6. 30일까지 연장승인을 받았음.
- 그러나 1997. 6. 30.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여 종전의 조례는 자동폐지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설치목적, 위치, 업무, 소장의 직급, 필요한 공무원은 종전과 같음.

○ 부칙

-제1항(시행일) 중 적용 시기를 1997. 7. 1일부터 하고

-제2항(폐지조례) 중 1999. 6. 30일 폐지한다로 함.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기한이 내무부로 부터 1997. 6. 30일에서 1999. 6. 30일까지 2년간 연장승인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본 조례 부칙(1995. 8. 22. 제234호)중 제2항의 "1997"을 "1999"로 함.

나. 충주시통밀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칠금동 지역의 삼일APT, 부영APT, 연수동 지역의 세원 한아름APT의 주민 입주로 적정규모의 통, 반을 증설 및 조정하고 문화동 지역의 호암APT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전출과 기타 면동의 지역내 기존 미달반을 인근 반으로 통합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통 : 343 → 358개 통으로 15개 통이 증설
  - 증설 : 18개 통 (칠금 15, 연수 3)
  - 폐지 : 3개 통 (문화 3)
- 반 : 2,626 → 2,696개 반으로 70개 반이 증설
  - 증설 : 107개 반 (칠금 84, 연수 23)

-매지 : 37개 반 (살미 2, 노은 2, 가급 1, 동양 1, 소태 5  
충인 2, 용산 4, 지현 3, 문화 15, 안림 2)

**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맞추고
-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의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불환 납부조항 신설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임대요율을 25/1,000로 조정

**다.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용자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상위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2조의 단서를 삭제
- 제9조 제1항중 "기부금"을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1997. 6. 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사업소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
- 내무부로부터 1999. 6. 30일까지 (2년간) 기한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개정하려 하였으나 기한내 의회의결을 받지 못하므로써 자동 폐지되고 다시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임.
- 또한 존속기한내에 민간위탁을 완료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내무부에서 기한을 연장 승인 하였으나 현재 운영상황으로 볼때 기한내 민간위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따른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에 의거 부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정원임

#### 다. 충주시동및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칠금동 지역의 삼일, 부영APT와 연수동 지역의 세원 한아름APT에 주민이 입주됨에 따라 2,340세대가 늘어나 18개 붕, 107개 반의 증설과 문화동 지역의 호암APT 재건축으로 204세대가 진출되어 3개 붕, 15개 반을 폐지 하는등 적정하게 붕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주민에게 시정시책을 보다 빠르게 전달하고 주민의 불편해소 및 읍·면·동의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음.

**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고
-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주거용인 경우 25/1,000로 되어 있고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공유재산사용료는 25/1,000 및 50/1,000으로 되어 있어 25/1,000로 형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다.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1997. 7. 1일부터 전문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금품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4. 질의 답변요지**

**가.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 질 의 )

○ 당초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시 민간위탁을 검토 하였는지?

답 변

○ 검토한 바는 없으며 내부부방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음.

( 질 의 )

○ 사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과 지출은?

㉮ 답 변

○ 사업소는 수수료 수입이 없으며 단지 농민의 이익 증대를 위하여 관리하는  
차원 임.

( 질 의 )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 답 변

○ 현재로서는 파악하지 못했으며 서면으로 답변 하겠음.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없 음

다. 충주시통밀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질 의 )

○ 연수 한아름 APT는 '96년 12월에 입주를 하였는데 조례 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 답 변

○ 의회의 사전승인과 도를 경유하여 다시 의회의결을 받는 기간이 있어 늦어진  
것임.

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질 의 )

○ 분할매각시 10년 정도 분납하다가 공장을 건축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등을 할 경우  
제도적인 제재 방안은?

답 변

○ 지역경제파에 재산관리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 관리하고 있음.

다.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없 음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다. 충주시통탄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마.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 가.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다. 충주시통탄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마.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조례 제 호

##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설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농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 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충주시 목행동 426-4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시설물의 관리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4.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및 담보물관리
5. 도매시장 사용료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징수
6. 기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시행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상당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 이를 폐지한다.

충주시 조례 제 호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1995. 8. 22 조례 제234호) 부칙중 제2항의 “1997”을“1999”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충의동"란을 충인·충의동"으로 하고 충인 제2통 "제3반" 내지 "제5반"을 "제3반" 및 "제4반"으로, 충인제3통 "제2반" 내지 "제4반"을 "제2반"및"제3반"으로 하고,

교현1동란중 제1통 "제5반"다음에 "제6반"을, 제31통"제5반" 다음에 "제6반"을 신설하고, 제10통 "제5반"및"제6반"을"제5반"으로, 제11통 "제5반"및"제6반"을 "제5반"으로, 제30통 "제4반"내지 "제6반"을 "제4반"으로, 제32통 "제4반" 다음에 "제5반"및"제6반"으로, 제37통 "제4반" 다음에 "제5반"을, 제42통 "제3반"및 "제4반"을 "제3반"으로 하고

용산동란중 제3통 "제3반"및"제4반"을 "제3반"으로 제4통 "제4반"및"제5반"을 "제4반"으로, 제7통 "제4반"및"제5반"을 "제4반"으로 제17통 "제4반"및 "제5반"을 "제4반"으로 하고

지현동란중 제1통 "제4반"및"제5반"을 "제4반"으로, 제7통 "제5반"을 "제4반"으로 제10통 "제5반"및"제6반"을 "제5반"으로 하고,

문화동란중 "제1통"내지 "제18통"을 "제1통"내지 "제16통"으로, "제20통" 내지"제35통"을 "제21통" 내지 "제35통"으로 하고,

칠금. 금룡동란중 "제8통" 다음에 "제9통" 내지 "제23통"으로 신설하고,

연수동란중 "제64통" 다음에 "제65통" 내지 "제67통"으로, 제61통 "제7반" 다음에 "제8반" 및 "제9반"으로 신설하고, 제1통 "제5반" 및 "제6반"을 "제5반"으로 하고,

중민. 안림. 목벌동란중 안림제1통 "제4반" 및 "제5반"을 "제4반"으로 목벌제2통 "제4반" 및 "제5반"을 "제4반"으로 한다.

[별표2] 리의 반명칭과 구역중 살미면란중 향산리 "제2반" 및 "제3반"을 "제2반"으로 하고,

노은면란중 안락리 "제1반" 내지 "제3반"을 "제1반" 및 "제2반"으로 연하리 "제8반" 및 "제9반"을 제8반으로 하고,

가금면란중 탑평리 "제4반" 및 "제5반"을 "제4반"으로, "제6반" 및 "제7반"을 "제6반"으로 하고,

동량면란중 하천리 "제2반" 및 "제3반"을 "제2반"으로 하고,

소태면란중 오량리 "제7반" 및 "제8반"을 "제7반"으로, 주치리 "제1반" 및 "제2반"을 "제1반"으로 "제3반" 내지 "제7반"을 "제2반" 내지 "제6반"으로,

구룡리 "제1반" 및 "제2반"을 "제1반"으로, "제3반" 내지 "제5반"을 "제2반" 내지 "제3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충주시 조례 제 호

##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 기부금”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